

 신안산대학교	<b>장학 규정</b>	규정 번호 2-5-2 제정 일자 1995. 3. 14. 개정 일자 2024.8.19. 책임부서/팀·계 입학학생처
---	--------------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의 건전한 학풍 수립과 학구열의 고취로 우수한 재능을 갖추고 또는 생활이 극빈한 학생이 학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모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9.>

**제2조(적용범위 및 지급대상)** ① 신안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기준은 국가기관이나 장학금 지원기관의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학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4.8.19.>

② 본교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및 재학생으로서 본 규정 제6조의 선발기준에 해당되는 자 및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4.8.19.>

**제3조(장학운영 및 보존)** ① 장학종별, 장학금액 및 장학인원은 매 학기별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장학에 대한 전산데이터는 준영구 보관한다.

**제4조**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며, 그 선발기준과 장학금 등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8.19.>

1. 교내장학금은 교비예산으로 편성된 장학금으로 별표1과 같다.
  2.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및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한다.
  3. 교외장학금은 기업, 교외단체(개인포함) 등 교외기관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그 명칭은 별도로 정하며, 선발기준 및 지원사항은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장학금은 고지감면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8.19.>

**제5조(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유발생 후 해당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8.19.>

1. 장학금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4.8.19.>
2.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자 <개정 2024.8.19.>
3. 미등록자 <2023. 2. 23. 개정>
4.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개정 2023. 2. 23., 2024.8.19.>
5.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단, 예외로 적용되는 장학금은 장학규정 별표 1에 따로 정한다) <2023. 2. 23. 신설> <개정 2024.8.19.>

**제6조(선발기준)**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3. 2. 23. 개정>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단, 예외로 적용되는 장학금은 장학규정 별표 1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23.2.23., 2024.8.19.>

2. 교내장학생의 장학종별 세부 선발기준은 장학규정시행세칙 제8조에 따른다. <2023. 2. 23. 개정>
3.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인정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정한다. <개정 2024.8.19.>
- ② <2023. 2. 23. 삭제>
- ③ <2022. 8. 11. 신설> <2023. 2. 23. 삭제>
4.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 편입생 등은 성적기준 적용을 제외한다.<신설 2024.8.19.>

**제7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반환조치)** ① 장학금 수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수령한 장학금은 반환조치 한다.

1. 휴학 또는 제적된 자. 단, 등록 후 휴학한 자는 제외한다.
  2.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장학금 수혜자가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
- ② 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3. 2. 23. 개정>

**제8조(초과수혜금지)** 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신설 2024.8.19.>

- ② 이중수혜인 경우 별표1 교내장학생 선정기준의 장학목적이 등록금 외 지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8.19.>

**제9조(장학금의 신청)** ①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학과추천 장학금은 제외한다. <2023. 2. 23. 개정>

- ② 학과추천 장학금은 제6조 선발기준에 의거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장학순위를 결정하고 장학 주관부서로 추천서를 제출한다. <2023. 2. 23. 개정>

③ <삭제 2024.8.19.>

**제10조(부대조건)** ① <삭제>

- ② 장학금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한 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관례에 따른다.

## 제2장 장학심의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장학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3., 2024.8.19.>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신설 2024.8.19.>
1.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장학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학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장학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24.8.19.>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신설

2024.8.19.>

- ⑤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24.8.19.>
-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시 장학생 선발 일체를 집행 할 수 있다.<신설 2024.8.19.>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며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입학학생처장이 된다.<신설 2024.8.19.>  
② 위원은 교원 중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24.8.19.>  
③ 위원회 간사는 입학학생처 장학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4.8.19.>  
④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24.8.19.>

### 제3장 장학금

**제14조(구분)** 장학금은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8.19.>

**제15조(종류)** ①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등록금 지원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 외 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장학규정시행세칙의 (별표 1)을 참고한다. <2023. 2. 23. 개정>  
② 교외장학금은 국가(공공)기관, 외부장학재단, 기업체 및 개인 등이 장학대상자를 지명하거나 선정 의뢰하여 지급하는 장학으로 한다. <2023. 2. 23. 개정>  
③ <삭제 2024.8.19.>

**제16조(교외장학)** 교외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해당학과 및 인원을 지정하거나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2. 교외장학금 지급 기관(단체, 개인 등)에서 대학에 학생의 선발을 의뢰할 경우 별도의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배정하며,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학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2. 23., 2024.8.19.>

####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와 제7조, 제8조, 제10조 개정규정은 2004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발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11.>**

이 규정은 202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별표 1]은 202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별표 1]의 전공심화과정특별(만학도), 특별(만학도)신입생, 특별장학은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장학규정 제6조 및 장학규정 시행세칙 제8조에 의한 장학생 선발 기준

## I 교내장학금

## 1. 등록금 지원 장학금

## 가. 일반 장학금

장학종류	장학금액	선정기준		성적기준		
		이수학점	평점			
학과 주천	세부 구분	장학금액	선발인원	선발기준	직전 학기 3.00이상	
	SAU최우수	등록금 전액	학년별 1명씩 배정 (단, 학년별 재학생 수가 50명 이하일 경우 선발 제외)	학년별 수석		
	세부 구분	장학금액	선발인원	선발기준		
	SAU수석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과정</li> <li>○ 학년별 각 1명씩 선발</li> <li>※ 학년별 장학생 배정 인원내에서 반 제한 없이 선정 가능</li> </ul>	◇전공심화 / 산업체위탁과정 ○ 학년별 각 1명씩 선발 ※ 학년별 장학생 배정 인원내에서 반 제한 없이 선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년별 인원수가 15명 이하인 경우 SAU박애만 선발</li> <li>▶ 학년별 인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선발하지 않음</li> </ul>		
	SAU진리	170만원				
	SAU박애	14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년별 인원수가 70명 이상일 경우 각 2명씩 선발</li> <li>▶ 학년별 인원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SAU박애만 선발</li> <li>▶ 학년별 인원수가 15명 이하인 경우 선발하지 않음</li> </ul>			
	다문화	7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중 1인 이상 외국국적인 학생</li> <li>▶ 외국국적의 부모 중 1인 또는 본인이 귀화한 학생</li> </ul>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2.00이상	
	초지	등록금 전액	전임이상 교원 및 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화목	70만원	직계존비속 및 부부, 형제, 자매, 남매 인 재학생				
주경	50만원	산업체위탁, 협약반에 재학 중인 자(2022년까지 입학자)				
안산시 산업체노동자	등록금 20%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수혜자				
공무원	등록금 30%	공무원, 군무원, 부사관 및 경기도내 전문대학교 직원인 자				
전공심화과정 특별	등록금 30%	전공심화과정에 재학중인 자				
전공심화과정 특별(만학도)	본인부담액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심화과정 재학(입학예정)인 자 중 만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국가장학금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휴학자는 다음학기부터 선정 불가)</li> <li>▶ 2024학년도 입학한 자부터 적용</li> </ul>				
복지	100만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100만원	외국국적을 가진 순수외국인인 자(단, 학칙시행세칙 제50조에 의한 유급자는 제외)				
장애학생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새터민 장학	등록금 50%	북한 이탈주민(자녀)으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교육비 지원기관 기준에 의한 지원 대상자(1/2은 국가지원)				
국가유공자	등록금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없음	직전학기 70점이상		
	등록금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손)자녀				
청솔	별도책정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교 및 학과활동에 기여한 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없음	없음		

## 나. 특별 장학금

장학종류	장학금액	선정기준	성적기준		
			이수학점	평점	
특별(만학도)	본인부담액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세 이상 입학자(2024학번부터)</li> <li>▶ 산업체위탁, 전공심화과정 제외</li> <li>▶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미신청자 제외)</li> <li>▶ 휴학자는 다음학기부터 선정 불가</li> <li>▶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ul>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없음	
	등록금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이후 입학한 25세 이상 만학도(2022~2023학번)</li> <li>▶ 산업체위탁, 전공심화과정 제외</li> <li>▶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미신청자 제외)</li> <li>▶ 휴학자는 다음학기부터 선정 불가</li> </ul>			
특별(만학도)신입생	1학년(입학연도) : 등록금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세 이상(산업체위탁, 전공심화과정 제외)</li> <li>▶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미신청자 제외)</li> <li>▶ 휴학자는 다음학기부터 선정불가</li> <li>▶ 2024학번 1학년만 적용 (2학년때부터는 특별(만학도) 기준으로 적용)</li> <li>▶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ul>			
특별(산업체위탁)	등록금 50%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023년 이후 산업체위탁 과정 입학자)			
최초등록자 특별장학금	200만원	신입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등록 후 입학한 자에 한해 첫 입학 학기만 지급. 단, 국가장학금 신청자만 해당</li> <li>▶ 고졸 후 진학자만 적용</li> <li>▶ 2025학년도 입학자에 한하여 적용</li> </ul>	없음	없음
차시등록자 특별장학금	100만원	신입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시등록 후 입학한 자에 한해 첫 입학 학기만 지급. 단, 국가장학금 신청자만 해당</li> <li>▶ 고졸 후 진학자만 적용</li> <li>▶ 2025학년도 입학자에 한하여 적용</li> </ul>	없음	없음
고른기회전형	본인부담액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25세 이상(산업체위탁, 전공심화과정 제외)</li> <li>▶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미신청자 제외)</li> <li>▶ 2025학년도 입학자에 한하여 적용</li> <li>▶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ul>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직전 학기 2.0이상	
특별SAU사랑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없음	없음	
특별(재난)	별도책정	국가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으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등록금 외 지원 장학금(생활비 / 대가성)

### 가. 일반 장학금

장학종류		장학금액	선정기준	성적기준	
		이수학점		평점	
공로	가. 총학생회	등록금전액	총학생회장	12학점 이상	직전 학기 2.00이상
		200만원	부총학생회장		
		180만원	국장		
	나. 과대표	160만원	학과대표 (신설 및 폐학과는 장학금액의 50%만 지급)		
부속기관	부속기관	120만원	미디어센터: 국장		
		100만원	미디어센터: 총무		
		80만원	미디어센터: 정국원		
		50만원	미디어센터: 수습국원		
장애학생도우미	별도책정	장애학생도우미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자	없음	직전 학기 70점이상	직전 학기 2.00이상
국가근로장학	별도책정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하는 자			
학과·행정부서 봉사장학금	별도책정	학과·행정부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하는 자	12학점 이상	직전 학기 2.00이상	
홍보도우미	100만원	별도 지침에 의하여 선정함.(단 1년에 최대 4명 이하 선정)			
홍보도우미(수습)	50만원	별도 지침에 의하여 선정함.(단 1년에 최대 4명 이하 선정)			
자격증 취득 장려 장학금	별도책정	▶ 별도 공고된 내용 기준으로 선발 ▶ 자격증 취득 및 관련학습, 연습시험 참여 여부 등을 포함하여 심사	없음	없음	
외국인 공인성적 장학금	40만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중급2 과정 이상 이수 ▶ 재학중 취득한 자에 한함		외국인유학생 (D-2-1, D-2-2)만 해당 -신입생 입학시 최초 1회만 지급함. 단,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제외함.	
	30만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취득 ▶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중급1 과정 이상 이수 ▶ 재학중 취득한 자에 한함			

### 나. 특별 장학금

장학종류		장학금액	선정기준	성적기준	
		이수학점		평점	
특별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특별공로, 재난, 가계곤란의 이유의 긴급지원 등)		없음	없음

## II 교외장학금

### 1. 등록금 지원 장학금

#### 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장학명	소득기준	지원금액	성적기준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국가장학금)	8분위 이하	소득분위별 차등	-학국장학재단 기준

#### 나. 한국장학재단 기타 장학금

장학명	지원대상	지원금액
국가장학금2유형 (신편입생지원금)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선발 시 성적 및 소득기준 미적용)	매년 상이
국가근로	소득 8분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이상인 자	▶ 교내근로: 한국장학재단 기준 ▶ 교외근로 : 한국장학재단 기준
희망사다리 I (중소기업 취업연계)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인 자 (※ 졸업 후 중소기업 의무종사 필수(수혜횟수 * 6개월))	▶ 등록금 전액+취창업장려금 200만원
희망사다리 II (고졸 후 학습자)	고등학교 졸업자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인 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전액 ▶ 대기업·비영리기관: 등록금 50%
전문기술인재	종합적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 I 유형: 등록금전액 및 생활비 ▶ II 유형: 등록금 전액

[별표 2]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장학금 반환 기준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 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